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6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,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공유재산대부 요율인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공공시설의 위탁관리(제5조)

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·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명시.

○ 재산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 폐지(제6조)

영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 정비.
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·생략조항 신설(제7조제2항)
영 제78조제2항 신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의 신설로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신설.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·매각대상 지역 조정(제19조의3)
대상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적용.
- 매각대금 분할납부 일부조항 폐지 및 용어정비(제22조제1항)
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 조항은 한시규정(2000.12.31)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.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 조정(제22조제4항)
 -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영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.
 -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하여 매각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.
-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(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, 제6항)
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료율·대부료율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탄력요율 조정(1000분의 50 → 1000분의 50이상, 1000분의 25 → 1000분의 25이상 등)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 신설(제23조제10항)

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인구집중시설이 지방(서울·인천·경기지역이 아닌 지역)으로 이전 신축시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.
-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폐지(제23조의2)

영 제100조의5(대부·사용료·매각대금의 체감)의 도입(2000.10.20 개정)으로 상충되는 조항 삭제.
-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(제25조제2항)
 - 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.
 -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(공용면적 포함)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.
-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제도 도입(제25조의2)
 - 복합공공시설물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에 한해 적용.
 - 사용료·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와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적용.
 - 전세금 산출은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·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
 -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도 재무회계규칙 준용.
-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(제28조)
 - 영 제100조 제6항·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·대부료·변상금에도 적용

- 조례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정리 하였고 새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 경감 조항 신설.

○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(제28조의2)

-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 사전예방 목적 신설 (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준용).
- 변상금 부과·징수시 사전통지서 발송.
- 의견서 제출 및 변상금 분할 납부시 분할납부신청서 제출.

○ 분할매각 규정 명문화(제39조의2)

제5항 제3호의 1981. 4. 30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매각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분할매각을 명문화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(2000. 10. 20)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의 범위 내에서

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대폭 인하하고,

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⇒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,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,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이 없는 바 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